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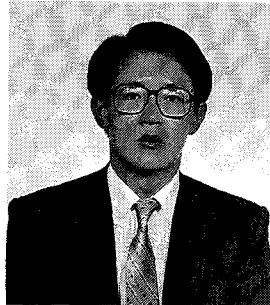
환경국제협약,江건너 불이 아니다

최근 들어 선진국과 유엔 환경계획(UNEP) 등을 중심으로 이미 체결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환경관련 각종 국제협약 및 규제조치는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몰고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부산물인 각종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관련 국제협약 및 규제조치는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전자·화학제품 등의 생산 또는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에너지다소비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존층파괴와 관련 지난 87년 체결된 몬트리올의정서가 수출입규제품목으로 정한 불화염화탄소(CFCS)사용제품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부터 수입물품세를 부과하고 있고, 93년부터는 가입국이 비가입국에 대해 수출입규제를 하기로 돼있다.

또 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이로에서 체결됨과 동시에 발효될 기후변화협약대기 오염물질 규제, 내년초 발효될 예정인 바젤협약(유해산업폐기물교역통제) 등도 몬트리올의정서와 유



孫庸態
(중앙경제 사회부기자)

사한 무역규제조치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 협약내용

● 몬트리올의정서 = 오존층 파괴 물질로 알려진 CFCS 및 할론의 사용과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87년 9월 채택된 협약으로 89년 1월 부터 발효됐다. 91년 8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80여개국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6월 몬트리올의정서 제2차 가입국회의에서 규제물질이 CFCS(5종), 할론(3종) 등 2개 품목에서 여타 CFC, 카본테트라클로로이드, 에틸클로로포름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5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규제 스케줄도 앞당겨졌다. <표참조>

◇ 몬트리올의정서 주요내용

1) 87년 9월 내용

규제대상	규제시기	연간소비량및 생산량
CFCS (11, 12, 113, 114, 115)	89년7월	86년 수준 동결
	93년7월	86년의80%이하
	98년7월	86년의50%이하
할론 (1121, 1301, 2402)	92년1월	86년기준동결

2) 90년 6월 수정내용

규제대상	규제시기	연간소비량및 생산량
CFCS (11, 12, 113, 114, 115)	91년7월	86년 수준 동결
	93년7월	86년의80%이하
	95년1월	86년의50%이하
	97년1월	86년의15%이하
할론 (1121, 1301, 2402)	2000년1월	사용및생산금지
	92년1월	86년의50%이하
여 타 CFCS	95년1월	사용및생산금지
	93년1월	89년의15%이하
카본테트라 클로라이드	97년1월	사용및생산금지
	93년1월	89년의15%이하
메틸클로 로포름	95년1월	사용및생산금지
	93년1월	89년의70%이하
	95년1월	89년의30%이하
	2000년1월	사용및생산금지

3) 수출입규제

구 분	당초규제물질	추가규제물질
규제물질규제	93년 1월 이후	93년 1월 이후
제품규제	93년 1월 이후	96년 1월 이후
일반무역규제	95년 1월 이후	98년 1월 이후

그러나 개정된 의정서는 20개국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내년 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의정서는 그러나 계획경제 국가(선진국특례조항)와 개발도상국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즉 계획경제의 경우 86년기준으로 규제물질의 생산·소비량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86년의 생산·소비량에다 87년 9월 16일이전에 이물질의 생산하기 위해 건설중이었던 건설계약중이던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질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도국의 경우 86년 현재 사용량이 1인당 연간 0.3kg이하인 나라는 의정서가입후 10년동안 규제를 받지않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측에 유리한 조건인 선진국특례조항으로 가입키 위해 UNEP와 협의중이며 만약 협의가 제대로 되지않을 경우 무역규제가 본격 실시되는 93년 이전에 일반가입국으로라도 가입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이 의정서에 의거, 수출입 규제가 93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CFC 할론 등의 생산·소비량을 줄여야하며 이에 따라 C-FC(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스프레이제품에 사용), 할론(분말소화기 등에 사용)의 대체물질을 서둘러 개발해야 된다.

● 기후변화협약=2005년까지 이산화탄소·메탄·일산화탄소 등의 방출량을 88년수준의 10~

CFC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된 뒤에야 한국과학기술원내에 대체물질기술센터가 설립됐으며

그나마 이물질개발에는 통상 9백억원정도가 투입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는 95년까지 3백43억원만 계획돼 있는 실정이다.

20%로 감축하고 이산화탄소 등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산업제품에 대해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2월 미국워싱턴에서 이 협약체결을 위한 선진국간 협상이 시작됐으며 늦어도 내년6월까지의 제정, 발효될 전망이다.

이협약이 발효될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석유 등의 사용이 제한됨은 물론 이를 연료로 하는 제품의 수출규제도 예상돼 각종 제조업·교통산업·에너지과소비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타격을 받게돼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 바젤협약=유해산업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통제가 주목적이며 87년 유엔총회에서 마련

됐다. 주요 내용은 협약국에 유해산업폐기물의 수출입금지 권한을 부여하고 카드뮴, 납 등 47개 유해산업폐기물의 수출때 수입국과 경유국에 사전통보하도록 돼있다.

이 협약은 그러나 발효에 필요한 20개국의 비준을 받지못해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으나 내년초에는 발효될 전망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구리나 아연스크랩 등에 대한 수출입규제가 이루어져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철강재생산업체나 제련업체는 심각한 원자재난을 겪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응

결국 유일한 대안은 각종 규제물질의 사용을 줄이면서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나 업체는 산업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올 각종 환경협약 및 입법조치들이 잇따라 발효 또는 추진되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쬐므로 여기고 있다.

CFC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된 뒤에야 한국과학기술원내에 대체물질 기술센터가 설립됐으며 그나마 이물질개발에는 통상 9백억원정도가 투입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는 95년까지 3백43억원만 계획돼 있는 실정이다.

또 기업도 「깨끗한산업」으로 변신함은 물론 살아남기 위해 저공해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